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관

제 정 2008. 12. 16.  
일부개정 2010. 4. 7.  
일부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3. 12. 27.  
일부개정 2016. 4. 11.  
일부개정 2018. 1. 19.  
일부개정 2019. 1. 22.  
일부개정 2020. 4. 12.  
일부개정 2022. 4. 6.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NEC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 <개정 2013.12.27.>
2. 보건의료기술 등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개정 2013.12.27.>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분석 <개정 2013.12.27.>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확산 <개정 2013.12.27.>
5.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개정 2012.5.15, 2013.12.27.>
6.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개정 2013.12.27.>
7.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개정 2013.12.27.>
8. 의료기술 및 제품의 임상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개정 2013.12.27.>
9.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제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 2013.12.27., 2022.4.6.>

**제5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의 예산을 요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임원별로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위원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개정 2010.4.7., 2013.12.27.>
3.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4.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 적립금
5.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③ 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취득)** ①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각, 양도, 담보제공, 임차, 무상양수,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4.7.>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4.7.>

**제8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4.6.>

1. 정부 출연금, 기부금
2. 사업수익금 및 이용료·수수료
3. 전년도 이월금 및 연구용역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연구원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은 보통재산을 재원으로 상환이 가능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회계원칙)** 연구원의 모든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그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6.>

**제11조(정부출연금 등의 예산요구)** ① 원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 예산요구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12조(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등)** ① 원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연간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정부출연금 지급예정일 30일 전까지 연간예산집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정부출연금 예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집행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예산)** ① 원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그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결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개정 2018.1.19.>
2.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감사의 의견서 <개정 2018.1.19.>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또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 및 수수료)** ① 연구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및 수수료는 연구원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예비비)** ① 연구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예산총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자산의 운용)** ① 원장은 자산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방법에 의하여 연구원 자산을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채, 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 매입
3. 수익증권의 매입

4. 연구원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임대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운영방법
- ② 원장은 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자산의 손실이 우려되어 긴급하게 자산의 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원장 포함)
  3. 감사 1명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19., 2019.1.22., 2022.4.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임원추천위원회)** 삭제 <2010.4.7.>

**제21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연구원의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5.15.>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제19조에 따른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한 상근 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4.7.>

- ② 원장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21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2.5.15., 2022.4.6.>

- ③ 비상근 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4.7.>
- ④ 당연직이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2.5.15., 2016.4.11., 2020.4.12.>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 3년
  2.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 : 2년
  3. 감사 : 2년
  4. 당연직이사 :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
-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2.4.6.>
- ③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2.5.15.>
-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 원장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직제규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직무대행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 보고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임무를 기초로 하여 임원별로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과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임원에 대해 주의·경고·감봉·직무정지 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 별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이 때 원장은 당해 직원에게 직무수행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직원이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해 주의·경고·감봉·직무정지 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당연퇴직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2.4.6.>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48조 및 제52조의3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또는 품위손상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제25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
- ④ 제1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2.4.6.>

**제27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 ②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6.]

**제28조(직원)** ① 연구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 ③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강임·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4.6.>
- ④ 직원의 인사·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⑤ 원장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 외에 계약 또는 임시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용과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직제 등)** ① 연구원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연구원의 직제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삭제 <2013.12.27.>

**제30조(인력 파견 요청)** ① 원장은 제4조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분야별 위원회)**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임직원의 보수)** ① 원장은 연구원에 소속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별도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3.12.27.>

② 원장과 상근이사는 본인에 해당하는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3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상근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근 임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2022.4.6.>

## 제5장 이사회

**제34조(이사회 소집 등)** 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장이 소집한다.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목적과 안건을 포함한 개최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제24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이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4.7.>

⑥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사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5. 정관 및 내부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2022.4.6.>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7.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8. 기타 원장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6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③ 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및 대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서는 의사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차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원장은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37조(의결권 제한)** 재적이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38조(이사회회의 회의록)** 원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2명 이상과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속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

면한다.

**제40조(이사회 규정)**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규정 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6.>

## 제6장 보칙

**제41조(비밀 엄수의무)** 연구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의 위촉·위탁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한 자도 또한 같다.

**제42조(지적재산권의 귀속)** 연구원의 직원이 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연구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응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제43조(정관의 변경)** 연구원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의2(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과 제반 업무 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사회 운영규정」
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 「직제규정」 중 정원 및 조직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4. 「인사·복무규정」 중 인사기준에 관한 사항
5. 「보수규정」
6. 「회계규정」 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제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제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6]

**제44조(해산)** ① 연구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45조(공고)** 연구원의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과 개별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제46조(경영공시)** 원장은 사업계획 및 성과, 예산 및 결산,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다른 규정의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2010.1.18.)에 따라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인사·복무규정」, 「재산 및 회계 관리규정」 등 다른 규정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조(설립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을 심의 의결한 설립 위원이 연구원의 설립을 위해 행한 제반행위는 연구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을 심의 의결한 설립위원이 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 중 연구원의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정관을 심의 의결한 설립위원이 추천한 원장 후보자는 연구원의 설립을 위해 설립준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설립준비팀 소속인 자가 연구원 설립을 위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직원이 행한 것으로 보며, 설립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연구원이 부담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 등)** ① 연구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정부회계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

장이 이를 집행한다. 다만, 원장은 이를 회계연도 말일 이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최초의 경영목표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당시 최초의 경영목표의 수립 시기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말로 한다.

**제6조(설립당시의 임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연구원 설립 당시 원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 후보자 중 장관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 설립 당시의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 설립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제7조(설립위원)** 설립위원은 연구원 설립을 위하여 현금 1,000,000원을 출연하며, 법 부칙(법률 제9028호, 2008.3.28)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위원 전원이 이에 연명한다.

2008년 12월 일

위원장 최원영 (인)  
위 원 손명세 (인)  
위 원 엄영진 (인)  
위 원 이규덕 (인)  
위 원 이선희 (인)  
위 원 이왕재 (인)  
위 원 허대석 (인)

부칙<개정 2012.5.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4.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0.4.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2.4.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